

#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15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9. 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9. 2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0. 1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범위를 국가유공자,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범위를 국가유공자,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내용추가(안 제2조제2항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법 제270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으며,  
○ 고성군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,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

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**5. 질의 및 답변 : 없음**

**6. 토 론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**

○ 2003. 10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